

상주시 공고 제2024-297호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상 주 시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조문을 변경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로 위임한 일반우편 송달금액을 45만원 미만으로 정함.

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기준금액이 30만원 ⇒ 45만원 변경

3. 개정조례(안):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3월 13일까지 상주시장(참조: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4. 2. 22. ~ 3. 13.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처: 상주시장(세정과)

- 1) 일반우편: (우742-706)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남성동) 상주시청 세정과
- 2) 이 메 일: choel234@korea.kr
- 3) 팩 스: 054-537-6129(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세과(☎054-537-72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